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63

발의연월일: 2022. 4. 21.

발 의 자:김용판·김예지·서일준

김성원 • 박대수 • 이주환

김영식 • 권명호 • 하영제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 등 경제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상황의 장기화 및 지속적인 바이러스 변이 발견으로 인하여 취약 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음.

이에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 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8)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제5호 및 제6호는 <u>2022년 1</u>	<u>2024년 1</u>
<u>2월 31일</u> 까지 공급한 것에 대	<u> 2월 31일</u>
해서만 적용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